

여성가족부
(교육과정등 집행기관)

제 호 년 월 일

수 신 ○○지방검찰청 ○○지청장

제 목 가해아동·청소년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
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해아동·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.

가해아동· 청소년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전화번호			
	소속학교		직 업	
	결정사항			
이수결과	[] 교육 이수 완료, [] 부분이수(시간), [] 교육 미이수			
조치사항	교육 이수	교육기간		
		참여시간		
	교육 미이수	사유		
담당자	소 속		기관 전화번호	
	성 명		그 밖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	

여성가족부장관·(교육과정등 집행기관의 장)

직인